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괄
정비 조례안

충청북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괄 정비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957
----------	-----

2022. 1. 19.(수)
행정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22년 1월 10일

다. 회부일자 : 2022년 1월 11일

라. 상정일자 : 2022년 1월 19일

- 제39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·의결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신형근 행정국장)

가. 제안사유

○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개정('21.12.15.공포, '22.1.13.시행)에 따라 인용 조문 등 단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단순 인용조문 변경

- 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 조례(시행령 94조 → 95조)
-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(시행령 76조 → 74조)
-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(시행령 78조 → 76조)

3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남범우)

- 이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 단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고자 제출되었음.
- 관련 조례 개정내용은,
 - 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1조 중 “같은 법 시행령 제94조”를 “같은 법 시행령 제95조”로 개정하고,
 -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5조제1항 중 “같은 법 시행령 제76조”를 “같은 법 시행령 제74조”로 개정하며,
 -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제1조 중 “같은 법 시행령 제78조”를 “같은 법 시행령 제76조”로 개정하는 것임.
- 이번 일괄 정비 조례안은 단순한 조문 변경의 사항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입법방식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도민의 자치법규 서비스 접근성과 이해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괄 정비 조례안」

충청북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괄 정비 조례안

제1조(「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같은 법 시행령 제94조”를 “같은 법 시행령 제95조”로 한다.

제2조(「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의 개정)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1항 중 “같은 법 시행령 제76조”를 “같은 법 시행령 제74조”로 한다.

제3조(「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」의 개정)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같은 법 시행령 제78조”를 “같은 법 시행령 제76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1. 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 조례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6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제95조에 ----- ----- -----.

2.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(설치) ① 「지방자치법」 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) 제1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지역사회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충청도립대학교(이하 "대학"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 ② (생 략)	제15조(설치) ①----- ----- -----제74조----- ----- 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

3.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경제자유구역 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27 조·제27조의2제28조와 같은 법 시 행령 제28조·제29조 「지방자치법」 제1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<u>제78조</u> 의 규정에 따라 충북경제자유구역 청의 설치와 조직 및 분장 사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76조</u> ----- ----- -----.</p>

관계법령 발취

□ 지방자치법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, 주민의 지방자치 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,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 시키며,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□ 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1조(목적) 이 영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